

수도법 법정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회 교육 강화



2005년 12월 31일 수도법이 개정되고, 2006년 6월 말 수도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및 수도시설운영요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수도산업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운영요원의 직무교육 체계 확립 및 자질향상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올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수도시설운영요원에 대한 법정교육이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를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교육기관에 의해 시행되게 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해 금번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수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수돗물 안정성 확보와 불신해소, 수도사업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도사업 전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 및 수도시설운영요원에게 3년마다 35시간의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은 수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최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고, 수도사업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요원의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도법 · 수도법시행령 교육관련 개정조문〉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p>第21條의5【教育】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者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改正 94. 8. 3, 97. 8. 28, 2005.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2. 貯水槽清掃業者 3. 일반수도사업자(신설) <p>② 일반수도사업자 및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p> <p>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 8. 3, 97. 8. 28)</p> <p>[本條新設 93. 12. 27]</p>	<p>제24조의3【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7. 1, 1998. 2. 24, 2005. 9. 14, 200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법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제2항에 위반한 자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교육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p>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 및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 및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저수조청소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6. 6. 30)</p> <p>④ 법 제2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9. 29, 2005. 9. 14, 200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절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p>⑤ 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7. 1, 1998. 12. 31, 200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⑥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7. 1, 1998. 2. 24, 1998. 12. 31, 2006. 6. 30)</p> <p>⑦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1994. 6. 16]</p>
<p>※ 별색은 이번 조문이 개정된 것임.</p>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112개 법률에 의거 총 332종의 법정 의무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상하수도 관련 법정 의무교육과정은 하수도법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1년 8시간의 의무교육이 3년마다 3개 기관(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보전협회)에 의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에서는 기존 저수조 청소업자 외에 신규로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의무교육이 추가되었다.

21세기의 물산업은 황금산업이라고 비유될 만큼 매력적인 산업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수도시설운영요원의 법정 의무교육과정 도입배경도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측면의 일환이며, 지방공무원 교육의 모범인 지방공무원교육법에서도 연간 공무원 개개인이 10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현재 협회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 법정 의무교육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교육을 통한 회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방법과 교육과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법정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운영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역량진단을 통한 교과과정 개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회는 사업자회원인 피교육자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고, 교육실시기관으로서 의무도 다하기 위해 '2006년 제2차 광역단체 교육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무교육 시행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실시기관과 피교육기관, 양자간의 상황을 종합·정리하여 의무교육에 검토·반영하고, 의무교육 시행 초기단계의 과오 및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 공급·관리'를 위한 우수한 수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 빠른 시간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